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방안*

최경진**

차 례

- I. 머리말
- II.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문제점
 - 1.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개인정보보호법제
 - 2.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문제점
- III.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개선방안
 - 1.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목적 및 규제방향 개선
 - 2.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체계 정비 및 법령 사이의 균형과 조화
 - 3. 개인정보 정의 규정의 개선
 - 4. 개인정보 활용 영역의 확대 - 중간 영역으로서의 익명화 정보 허용
 - 5. 개인정보의 합법적·비침해적 이용 규정 확충
 - 6. 개인정보 수집 동의 제도 개선
 - 7. 개인정보의 국가간 이동에 대한 규제 실효성 확보
- IV. 맺음말

* 이 논문은 2017년도 가천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결과임(GCU-2017-0190)

**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접수일자 : 2017. 11. 30. / 심사일자 : 2017. 12. 10. / 게재확정일자 : 2017. 12. 12.

I. 머리말

빅데이터(Big Data),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과 같은 새로운 ICT 기술과 서비스가 등장하고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새로운 혁신이 가져올 미래의 변화상을 4차 산업혁명(Fourth Industrial Revolution)¹⁾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정확히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지만, 혁신을 통하여 사회와 경제를 변화시키고, 특히 경제적·산업적 측면에서는 기존과 다른 방식의 생산, 유통, 판매 등 경제활동이 일어나고 지능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산업이 미래의 주요 산업으로 등장할 것으로 기대하는 점에 대하여는 일치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혁신과 변화가 아직 완전히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그러한 변화를 맞이하면서 법적인 측면에서는 특히 개인정보와 관련한 쟁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4차 산업혁명으로 도래하게 될 미래 사회는 거의 모든 사회·경제활동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미래 경제를 데이터 기반 경제(Data-driven economy)의 도래로 예측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4차 산업혁명은 모든 산업분야에 데이터에 기반한 지능을 접목시킴으로써 단순한 자동화를 넘어서 새로운 혁신을 이룰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사회와 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기초가 되는 데이터는 불가피하게 사람에 관한 데이터가 주를 이루거나 중요한 부분이 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소비자와의 접점이 있는 분야에서는 개인에 대한 더욱 정밀한 데이터와 지능적 판단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시도가 일반화될 것이다. 사람이 원하는 것을 굳이 개별적으로 확인하지 않더라도 지능적 판단에 의하여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시대에는 그만큼의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으로부터 도래할 미래 사회에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개인에 관한 정보가 수집되고 처리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한다.

1) Klaus Schwab,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at it means, how to respond". World Economic Forum - Global Agenda :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ttps://www.weforum.org/agenda/2016/01/the-fourth-industrial-revolution-what-it-means-and-how-to-respond/>> (2017.11.30. 최종방문).

그런데 이처럼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고, 개인에 관한 데이터를 지능적으로 분석하여 개인에게 일정한 작용이 생겨나고 그에 따라 일정한 영향이 미치게 되면 불가피하게 프라이버시 혹은 개인정보보호의 문제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과도한 데이터의 처리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의 이슈가 생겨나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규제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우리는 미래 사회에서의 경쟁력을 갖추고 네트워크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결되는 글로벌 경제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의 촉진과 활성화는 필수불가결한 과제이다. 결국 법적 측면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촉진하기 위한 시대적 흐름에 순응하면서도, 기존에 법으로 보호하고자 했던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와 맞닿아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의 실효성도 유지해야 하는 딜레마에 놓이게 된다. 두 가지 충돌하는 가치는 어느 쪽도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관한 사람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4차 산업혁명이 불합리하게 저해되지 않고 촉진될 수 있도록 법적 규제에 있어서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이 글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가 개인정보보호법제에서 가지는 의의와 현행 법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문제점

1.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개인정보보호법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 우리의 사회와 경제가 얼마나 어떻게 바뀌게 될지 구체적으로 모두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구체적으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어떠한 쟁점이 생겨날지 정확하게 예상하여 미리 규제를 하거나 규제를 제거하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주요 산업과 서비스에서 4차 산업혁명을 통하여 변화시키고자 의도하는 방향을 보면 4차 산업혁명이 개인정보에 미치는 영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의의를 가늠해볼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끄는 주요 분야 중의 하나가 인공지능 분야이다. 인공지능은 초고성능 컴퓨팅 파워와 빅데이터, 지능형 사물 인터넷 등이 결합되어 교통, 의료, 전자상거래, 물류, 광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고 있다. 의료의 사례를 살펴보면, IBM의 인공지능인 왓슨을 종양학 분야에 적용하여 암을 진단하고 치료법을 제시할 수 있는데, 사람보다 훨씬 많은 지식을 바탕으로 가장 적합한 치료방법을 찾아냄으로써 이미 실제 활용되어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가까운 미래에 지능형 교통망이 구축되고 자율주행자동차가 연결되면, 사람의 개입 없이도 자동차가 스스로 주변 환경을 파악하여 주행하고, 주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자율주행자동차와 정보를 주고받거나 지능형 교통망을 통하여 주변 교통상황이나 교차로에서의 보행자에 대한 정보, 신호등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받아서 가장 안전한 방법과 가장 빠른 길을 택하여 주행이 이루어지게 된다. 전자상거래의 경우에도 기존에는 소프트웨어에 의한 자동화를 통하여 사업자는 별도의 조작 없이도 소비자가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사전에 설정된 값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었지만, 자동화된 것 외에 계약 체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전에 사업자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그러나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이 결합된 환경에서는 사람이 미처 알지 못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예측하지 못한 범위 내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있다. 인공지능을 이용하려는 사람의 의도는 사람의 개입 없이도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예측해서 적시에 적합한 물품과 서비스가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도에 충실하도록 인공지능에 기반한 전자상거래 체계가 구축되면, 예를 들면, 집 내부에 있는 소파, 텔레비전, 리모콘, 거울, 냉장고, 전화기, 오디오 기기 등 다양한 곳에 센서가 부착되고 이 센서들이 연결된 사물인터넷을 통하여 무수히 많은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한 후에 이를 바탕으로 냉장고 속에 들어 있는 각종 식품이나 식재료의 양과 질을 분석하여 해당 가구의 식생활 패턴에 맞는 식품을 지능적 의사결정에 기하여 주문을 하는 경우에는 때때로 사람이 미처 예

측하지 못한 주문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생겨날 수 있다. 오히려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려는 취지는 사람이 굳이 고민하지 않아도 알아서 모든 것을 해주길 바라는 의도가 깔려 있기 때문에 사람이 예측하지 못하거나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전자상거래를 통한 계약체결이 이루어지는 것이 주된 상황일 수도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나타날 몇몇 상황들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사람 주변에 많은 센서가 존재하고, 이들 센서로부터 사람이나 사물, 환경 등에 대한 무수히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게 된다는 점이다. 수집되는 데이터가 집적되어 상상할 수 없는 크기의 빅데이터가 생성되고, 이들 빅데이터가 인공지능에 의하여 분석·처리되어 일정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그러한 인공지능에 의한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사람에게 일정한 작용 또는 효과가 발생한다. 일정한 작용 또는 효과의 내용은 사람에 대한 정보 제공일 수도 있고, 사람에게 광고가 제공될 수도 있으며, 사람이 원하는 물품이나 서비스가 제공될 수도 있다. 그 어느 것이든 궁극적으로 사람이 의도한 것이었거나 또는 사람이 원하는 방향과 일치하는 것인 경우에는 법적인 규제의 필요성은 없거나 희박하다. 하지만, 그러한 작용이나 효과가 사람이 원하지 않는 것이었거나 사람의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발생하거나 더 나아가 사람에게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게 된다면 그러한 정보처리는 규제가 필요하다. 전자가 4차 산업혁명을 통하여 꿈꾸는 미래이고, 후자가 개인정보보호법제가 필요한 이유이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혁신적으로 변화하게 될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사람에 관한 많은 정보가 수집·처리되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더욱 정밀하고 정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집적과 결합이 불가피하다. 또한 지금도 전세계는 네트워크의 발달로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미래에는 더욱 진보된 지능형 네트워크가 전세계 곳곳을 연결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지능형 네트워크를 통한 국가간 개인정보의 유통도 훨씬 빈번하고 대규모로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방대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개인정보의 결합을 통한 빅데이터의 형성,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이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개인정보가 항상 안전하게 처리되고 유통

되는 것만은 아닐 것이다. 개인정보가 소규모로 처리되고 결합되거나 유통되는 경우에 비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나 속도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러한 발전에 따라 남용되거나 유출되는 경우에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피해도 예상할 수 있다. 개인에 관한 모든 것이 데이터화되어 네트워크 상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개인에 관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통하여 수집·처리된 정보를 이용하면, 특정 개인의 계좌에 접근하거나 신분을 도용하거나 무단으로 거래를 하거나 그 개인의 정보를 조작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삭제하는 행위 등을 하기가 훨씬 용이해질 수 있다. 또한 데이터의 양이 많아질수록 많은 사람의 정보를 처리하게 되기 때문에 침해받는 개인의 수도 지금보다 훨씬 많아질 수도 있다. 심각한 경우에는 사회질서가 침해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무제한적인 수집이나 처리를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여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도록 법적인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역할을 개인정보보호법제가 수행하여야 한다. 결국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의의와 역할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으며, 사람에게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4차 산업혁명의 본래 의도를 살리면서도 사람의 본질적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열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개인정보보호법제를 잘 정비해 가야 한다.

2.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문제점

(1) 개인정보보호법제 및 규율체계 현황

현재의 개인정보보호법제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적 역할을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개인정보보호법”이라 함)을 중심으로 하여, 정보통신망에서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 신용정보를 규율하

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함), 위치정보에 적용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라 함) 등이 개인정보를 주된 적용대상으로 하여 시행되고 있다. 이외에 개별 법률에서 개인정보와 관련한 규정을 산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²⁾ 이처럼 법령 수준에서 개인정보를 규율하는 것과 함께 실제 법을 집행하는 행정청에서 개인정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가이드라인의 형태로 발표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개인정보의 비식별조치를 통한 개인정보의 활용을 가능하게 하려는 의도로 제정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이하 “비식별 가이드라인”이라 함)이나 온라인 상의 맞춤형 광고에서 쿠키나 트래킹 기술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경우를 규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하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이라 함) 등이 있다.

이상과 같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 하에서 실제에 있어서 온라인 상의 개인정보처리와 위치정보의 처리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규율하고 있고, 신용정보에 대하여는 신용정보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규율하며, 나머지 오프라인 영역과 공공 영역에서의 개인정보의 처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가 규율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의 작성, 법령의 개인정보 침해 요인 평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공공기관 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의 해석·운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맡기고 있다.³⁾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전문기관으로서 한국인터넷진흥원⁴⁾이 조사·분석·연구 등의 업

2) 예를 들면, 「의료법」 제18조제3항에서는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제3항에서는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고등교육법」 제11조의3 제4항에서 교육통계조사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근거를 규정하고 있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9에서는 동법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운영기관 협의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3) 개인정보보호법 제7조 및 제8조.

무를 맡고 있으며, 개인정보침해가 발생한 경우에 침해신고 및 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⁵⁾가 운영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⁶⁾

(2)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문제점

1)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중복·부조화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주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개인정보보호법령 사이의 중복이다. 개인정보보호법제를 연혁적으로 살펴보면, 정보통신망법이 먼저 입법이 된 후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일반법이 먼저 제정되고, 그 기본 원칙 하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특별법이나 개별법이 제정되면 법률 사이의 체계적 정합성이 비교적 유지될 수 있을 것이지만, 정보통신망법이 먼저 시행되고 있던 중에 그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고, 법률 사이의 관계에서도 정보통신망법이 개인정보보호법의 특별법적 지위에 있다 보니 불가피하게 법제 사이의 정합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였다. 그런데 각 법률에 대하여 서로 다른 부처가 소관부처로서 규율하다 보니 그 괴리가 충분히 극복되지는 못하였다. 최근 비식별가이드라인과 같이 개인정보 관련 부처가 협업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지만, 아직 법률 단계에서의 중복이나 부조화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못하고 있다. 그리고 나아가 법률 개정 소요가 생겨나면서, 일반법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예외나 개별 법률상의 특별한 규정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은 가급적 일반법에 일원적으로 규정하고 그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⁷⁾ 여러 법률들에 중

4)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보통신망법 제52조에 따라 설립되어 동법에 의한 온라인 상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전문기관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동법 상의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

5) 개인정보보호법 제62조와 정보통신망법 제52조 제3항 제9호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에 의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침해신고의 업무를 수행한다. 양 법령에 의하여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설치·운영되고 있다.

6) 분쟁조정 접수 및 사실 확인 등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무처리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사무기구가 수행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50조.

복하여 규정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2014년 1월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고 이후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이 모두 개정되어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구제를 강화한다는 취지하에 3개 법률 모두 법정손해배상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명문화하였다. 그런데 그 규정의 내용은 대체로 대동소이하다. 이처럼 유사한 법조문을 계속 중복하여 규정하는 것은 수범자 입장에서 해당 분야 법률 하나만 따르면 된다는 측면에서는 장점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완전히 동일하게 규정되지 않는 이상 법률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고, 또한 특별법적 성격이 있는 신용정보법이나 정보통신망법의 규정이 일반법적 성격을 가지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일부라도 상의할 경우에 다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자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체계적인 정합성 측면에서는 중복과 부조화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제에 의하여 보호받는 국민의 입장에서도 특별법적 규정의 필요성이 없는 이상 가급적 규정이 일원화되어 있는 것이 권리 실현의 측면에서도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수범자 입장에서도 어느 법률에 의하건 지켜야 될 법규정을 명확히 해줌으로써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법적 안정성을 꾀할 수 있기 때문에 중복 규정이나 부조화한 상태는 가급적 지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범위 및 판단기준 불명확

개인정보보호법제는 그 적용대상을 공통적으로 ‘식별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즉, 개인정보보호법은 그 법의 적용대상인 개인정보에 대하여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

7) 특수 영역에 대하여 실제법적 기준은 일반법에 의하여 규율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해당 특수 영역에 대한 법의 집행을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적 집행권한을 가진 부처가 할 것인지, 아니면 해당 특수 영역에 대한 소관부처가 일반법에 기하여 집행권한을 행사하도록 할 것인지의 문제는 연계된 문제이기는 하지만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야 한다.

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⁸⁾로 정의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법도 적용대상인 개인정보를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⁹⁾로 정의한다. 이들 규정의 공통점은 개인정보인지 아닌지의 판단기준으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지의 ‘식별가능성’을 판단표지로 한다는 점이다. 또한 두 법은 식별가능성이 없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는 때에도 개인정보로 인정한다고 하여 또 다른 판단표지로 ‘결합의 용이성’을 설정하고 있다. 이처럼 식별가능성과 결합의 용이성은 불확정 개념으로 식별가능한지의 여부나 결합이 용이한지의 여부는 개별적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할 여지가 크다. 해당 정보 자체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인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 오히려 많은 정보들은 다른 정보와 결합함으로써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다른 정보와의 결합의 용이성이 매우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이 때에도 결합이 용이한 ‘다른 정보’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게 된다. 즉, ‘다른 정보’를 개인정보 처리자가 보유한 정보만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개인정보 처리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입수할 가능성이 있는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그도 아니면 개인정보처리자를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객관적으로 결합이 용이한 정보 모두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서 인정되는 개인정보의 범위는 달라진다. 또 다른 판단표지인 ‘식별가능성’의 경우에도 식별가능한지의 정도는 식별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보로부터 식별가능성이 매우 낮은 정보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다양하다. 여러 정보가 결합될수록 식별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으며, 앞서 본 결합가능성이 존재하는 한 아무리 식별가능성이 낮은 정보라고 하더라도 기술적 측면에서는 식별의 ‘가능성’이 존재한

8)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9)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6호.

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면, 개인정보로 인정되는 범위는 매우 넓어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수범자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의 결합가능성과 어느 정도의 식별가능성이 있으면 개인정보에 해당할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문리적 해석에 기초하고 기술적 가능성에 중점을 두어 판단하게 되면 개인정보의 범위는 사실상 최대한으로 확장한다. 지난 몇 년 동안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적용대상인 개인정보의 개념정의 혹은 그 범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진 것도 이러한 방식의 해석이 실제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2011년의 소위 ‘증권통 앱 사건’ 판결¹⁰⁾에서 “쉽게 다른 정보를 구한다는 의미이기 보다는 구하기 쉬운지 어려운지와는 상관없이 해당정보와 다른 정보가 특별한 어려움 없이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한다”고 해석하면서, 이러한 해석에 기하여 휴대폰에 부여되는 기기 고유번호인 IMEI와 USIM 카드의 일련번호는, 비록 증권통 앱 운영자가 이동통신사의 고객관리DB에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동통신사의 고객관리DB 안에서 IMEI 및 USIM 정보와 신원확인정보(이름 및 주민등록번호)가 결합되어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그런데 이 판결은 결합의 용이성을 넓게 해석함으로써 인해서 “무리한 확장해석 및 적용이라고 평가될 수 있다”¹¹⁾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해석상의 논란과 함께 또 다른 논란을 야기했던 것이 바로 비식별 가이드라인이다. 비식별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를 적정하게 비식별 조치하여 활용하려는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설정하면서, 구체적인 비식별 조치 단계를 4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별 조치사항과 유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하였다. 정부는 비식별 가이드라인 발간자료를 통해 “산업계의 빅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며, 빅데이터 이용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불식될 것으로 기대”한 것으로 보아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조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2.23. 선고 2010고단5343 판결.

11) 이인호,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 개념에 대한 해석론 - 익명화한 처방전 정보를 중심으로 -”, 정보법학 제19권 제1호(2015), 82쪽.

정부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비식별 가이드라인이 제정된 이후에 오히려 개인정보의 개념 정의나 범위에 더욱 혼란을 가져왔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즉, “비식별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비식별화 처리를 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이다. ... 문제는 비식별화 처리를 해도, 다른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와의 결합을 통해 '재식별'될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재식별의 위험성은 정부도 인정하는 바”¹²⁾ 라고 하여 비식별 가이드라인의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나아가 최근 참여연대는 비식별 가이드라인을 따른 삼성화재, 현대차, 통신3사 등 20여 개 기업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4개 공공기관을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에 이르렀다.¹³⁾ 한편, 맞춤형 광고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개인정보 분석과 처리가 불가피한데, 현행 비식별 가이드라인은 사업자가 안심하고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기준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¹⁴⁾ 개인정보의 보호를 주장하는 쪽이든 개인정보의 활용을 주장하는 쪽이든 현행 비식별 가이드라인은 법적인 명확성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가해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문제는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각종 규정들을 적용하기 위한 대상을 확정함에 있어서도 명확한 기준이 없거나 법규범 사이의 충돌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발생하는 불명확성은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수범자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유인을 뺏어버리거나 아니면 법을 무시하고 개인정보를 처리하도록 만들어 법을 형해화 시킬 수 있는 위험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의 개인정보보호법제는 다양한 형사적

12) 오병일, “개인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 활성화 정책의 문제점”, 『의료와사회』, 6호 (2017.7.), 26쪽.

13) 이데일리 2017.11.30.자 “데이터 규제 개선’ 미진한 4차 산업혁명 대응 계획”,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3696566616130968&mediaCodeNo=257&OutLnkChk=Y> (2017.11.30. 최종방문).

14) 우리 기업들은 구글의 Ad-ID와 같은 비식별키를 활용하는 것조차도 현행 법제 하에서 불법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이데일리 2017.10.19.자 “우리 기업은 '손발 묶여'..구글·페이스북 모바일 광고가 잘나가는 이유”,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3548966616094560&mediaCodeNo=257&OutLnkChk=Y> (2017.11.30. 최종방문).

및 행정적 제재를 규정하고 있어서 그러한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불명확성은 정보의 처리를 주된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에 매우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 규제가 강하더라도 명확하면 비용이 들더라도 그것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설계하면 되지만, 명확하지 않으면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훨씬 커질 수밖에 없고 결국 사회·경제의 발전을 저해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정의 및 범위와 판단기준을 명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하거나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3) 합리적 개인정보 활용 수요에 대한 유연성 부족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가속화될수록 개인정보의 처리 필요성은 높아질 것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개인정보가 수집, 가공, 결합, 분석 등 처리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이러한 처리 중에서는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처리의 필요성이 높은 경우가 생겨날 수 있다. 또한 처음 법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했던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수요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개인정보 처리 수요에 맞춰서 기존의 법을 적용하여 무조건 규제하거나 막는 것보다는 유연하게 대응하여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해주는 것이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조화와 사회·경제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할 것이다. 예를 들면, 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시장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건물 입구 혹은 특정 도로의 길목 등에 CCTV를 설치해놓았지만, 해당 CCTV는 사람의 얼굴을 저장하지는 않고 남성인지 여성인지의 구분, 몇명이 지나가는지와 같이 특정 개인정보는 일정한 통계를 추출하기 위한 기능만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CCTV 설치가 허용되는 5가지 사유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설치·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다. 심지어 연구목적으로 대학이나 연구소의 도로에 설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또 다른 사례로는 그 동안 많은 논란이 되어 왔던 이슈 중의 하나인 비식별화된 정보의 처리 허용 여부의 문제이다. 이 문제는 앞에서 살펴본 개인정보의 개념 정의 이슈와도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우리 개인정보보호법

제는 개인정보의 개념 표지를 식별가능성에 두고 있어서, 식별가능하면 개인정보, 그렇지 않으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문제는 식별가능성의 인정 범위가 모호하면서도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매우 넓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는 무수히 많은 데이터를 모아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서야 비로소 식별이 가능한 것도 이론상 혹은 기술적으로는 식별가능한 것이 될 수 있어서 그러한 정보들도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각종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결론에 다다를 수 있다. 그런데 실무상으로는 명확히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보다는 오히려 그 자체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지만 다른 정보와의 결합을 통해서 비로서 식별이 가능하지만, 굳이 특정 개인과 연결시키지 않더라도 상업적으로나 공익적 목적으로나 유용한 의미를 가지는 정보들이 많이 있다. 그러한 정보들도 결합가능성을 넓게 해석하게 되면 모두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각종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식별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비식별조치를 통하여 합법적인 활용의 길을 열어주고자 하였던 것이지만, 법령 상의 개인정보 개념 정의와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는 비식별조치를 통한 개인정보처리를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정보는 결합가능성과 재식별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고 결국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규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¹⁵⁾¹⁶⁾ 반면 완전히 비식별화되어서 사실상 파편화된 정보는 정보로서의 활용가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국 실무상 필요로 하는 정보는 식별성은 높지 않지만 여전히 개인정보가 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정보들인 경우가 많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

15) 최근 시민사회단체들이 비식별조치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기업과 전문기관을 개인정보보호 관련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데일리, 2017.11.9.자 “시민단체, KISA 등 개인정보 비식별화 전문기관 및 20개 기업 고발”, <http://www.edaily.co.kr/popup/print_popup.html?newsId=01492406616124080&mediaCodeNo=257> (2017.11.30. 최종방문).

16) 오병일, 앞의 글, 29쪽은 정부가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비식별 조치들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업에게 권고할 사항일뿐이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면 법적인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물인터넷을 통하여 수집하게 되는 대부분의 정보는 그러한 정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정보들을 집적하거나 결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보로 처리하는 것이 새로운 핵심 산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영역에 속한 정보를 법적으로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 혹은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4) 동의 기반의 형식적 규제 중심의 법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를 살펴보면, 모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첫단계에서의 고지와 동의를 요구한다. 형식적으로는 개인정보의 원칙적인 처리 금지, 예외적인 허용 형태로 규정되어 있고 예외적인 처리 허용 사유에서 동의를 얻거나 법령의 근거가 있는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제나 다른 개별법 상의 구체적인 법적 처리 근거가 없는 이상 일반적으로는 ‘고지 후 동의’가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된다.¹⁷⁾ 이를 뒤집어 생각하면, 동의만 받으면 실제에 있어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범위가 매우 넓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진전할수록 사람은 인공지능이나 사물인터넷 등의 혁신적 신기술의 편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동의를 거부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 또한 다양한 정보를 수시로 얻고 지능형 네트워크 내에서 인공지능을 통하여 다양한 정보가 결합·분석되고 제공되기 때문에 동의 기반으로 개인정보처리가 이루어지더라도 실제 자신이 무엇에 대하여 동의를 주었고 어느 범위까지 동의를 주었는지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¹⁸⁾ 그리고 점

17)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3조, 제24조과 정보통신망법 제22조, 제23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6조 등에서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중요한 법적 근거로 설정하고 있다.

18) 실제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기기나 기타 물리적 제약으로 동의의 내용이 명확히 알아보기 쉽게 고지하지 않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최근 홈페이지 사건에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고지문구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작은 약 1mm 크기의 글씨로 표시한 것에 대하여 유효한 고지라고 판단한 1심과 항소심 판결을 두고 논란이 제기된 것도 동의와 동의를 위한 고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안겨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8. 선고 2015고단51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2. 선고 2016노223 판결.

차 사물인터넷이나 인공지능을 위해서 한 번에 매우 많은 사항에 대하여 고지를 받고 동의를 할 개연성이 점점 높아진다. 이런 상황에서 고지 후 동의만 하면 법적 책임에서 면할 수 있는 구조는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반면, 동의 기반의 형식적 규제를 강조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동의를 받을 환경이 되지 못하지만 매우 강력한 보안과 관리체계를 두고 매우 제한적인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여 처리함으로써 실질적인 보호수준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제 위반이 되어서 민사상 또는 행정상 책임이나 더 나아가 형사상 책임까지 부담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법을 지키지 않거나 아니면 법을 준수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업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 수도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본격적으로 접어들면 사물 사이의 지능 통신이 활발하게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한 통신으로 주고받는 정보 중에 상당수는 개인에 관한 것일 수 있고, 그러한 정보들은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도 다수 포함될 여지가 있다. 그런데 지능형 사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 일일이 동의를 받거나 사전에 불특정 다수로부터 동의를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이동형 기기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더욱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경우에도 현행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동의를 받거나 아니면 다른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개별적인 서비스나 신기술마다 개별적인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고 실현가능하지도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 법논리적 측면에서는 개인의 인격적 법익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처분권을 가진 개인이 동의를 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부여하고 위법성을 조각시키게 된다는 측면에서 동의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거나 무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형식적 동의의 형해화된 측면을 과감히 인정하고 고지나 동의가 보다 효과적인 법적 근거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법제의 개선이 필요하다.

5) 개인정보의 국가간 이동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와 역차별

4차 산업혁명으로 변화될 미래의 세계는 사물인터넷이나 인공지능으로 촘촘히 연결되어 데이터를 주고받는 세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의 데이터 환경은 지금보다 더 국경간 장벽이 사라지고 더 큰 빅데이터를 향해서 개인정보가 집적 처리되는 환경으로 변할 것이다. 이런 시대에 개인정보의 국가간 이동을 무조건 금지하거나 사실상 국내의 형식 규제를 따르기 어려운 외국 사업자를 무한정 국내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아두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¹⁹⁾²⁰⁾ 더욱이 우리나라는 무역 강국으로 전세계의 여러 나라와 활발한 무역을 통해서 성장해왔기 때문에 미래 데이터 기반 경제에서는 더더욱 국가간 데이터의 이동을 활발하게 하여 그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게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편,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무제한적으로 해외로 흘러나가서 우리 국민들에 대한 빅데이터가 해외의 사업자나 정부 등의 시스템에 저장되어 처리된다면, 유출이나 남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 우리 정부가 우리 법을 적용하여 제재를 가하거나 구제를 해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일을 사전에 막기 위하여 우리 법제에서 요구하는 각종 규제를 모두 준수하라고 요구하는 것 또한 현실적이지 않다. 이처럼 개인정보의 국가간 이동을 금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사실상 규제의 사각지대에 계속 놓아두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

-
- 19) 국외이전을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게 되면, 해외에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와 국내에서 처리하는 자 사이에 법규제 상의 역차별이 발생하게 된다.
- 20)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특히 개인정보가 해외의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처리되는 경우에 정보주체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은 “이용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 정보가 저장되는 국가의 명칭을 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를 이용하는 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에게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여부와 자신의 정보가 저장되는 국가의 명칭을 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게 제공할 때에는 국내 개인정보 제공 동의 시 고지하는 사항²¹⁾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²²⁾고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는 국외이전에 대하여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 규정에 의하면 제공 시에만 별도의 동의가 요구되며, 그 외의 처리 유형의 경우에는 국내법과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또한 정부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²³⁾ 반면,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처리위탁·보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이라 한다)하려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고 이용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제3항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린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보관에 따른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²⁴⁾고 규정하면서 동의를 받아서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다.²⁵⁾ 그런데 개인정보가 국외로 이전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침해의 위험은 개인정보가 국외로 이전하는 행위의 태양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국외이전을 규율하는 주된 목적은 우리의 개인정보보호법제가 유효하게 적용되지 않거나 우리나라 정도의 보호수준을 갖추지 못한 국가로 이전하거나 우리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외국으로 이전함으로써 인하여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가 불충분해지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국외이전에 대한 규율체계를 고민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

21)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2항 각 호.

22)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3항

23) 개인정보보호법 제14조 제2항.

24) 정보통신망법 제63조 제2항.

25) 정보통신망법 제63조 제4항.

보통신방법은 제공·처리위탁·보관에 대해서만 별도의 동의를 받도록 차별적인 규정을 하면서, 정보통신방법 제63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사실상 처리위탁이나 보관의 경우에는 동의 없이도 국외이전이 가능하도록 여지를 만들어놓았다. 또한 현행 규정에 따르면, 국외로 개인정보가 이전될 때에 동의를 받아서 이전하는 경우에만 보호조치를 취하면 되고,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보호조치가 취하지 않아도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고 있다. 더욱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국외이전과 정보통신방법에 따른 국외이전이 서로 다르게 규율하고 있는 것도 온오프라인이 융합되어 가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법제간의 불균형으로 인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외이전에 관한 법률간 정합성 측면에서의 불균형성이나 규율되는 행위 유형 사이에서의 불합리성도 존재하지만, 한편으로는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명확한 목표 의식을 정립하고 그에 맞게 실질적으로 국외이전을 규율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글로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수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Ⅲ.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개선방안²⁶⁾

1.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목적 및 규제방향 개선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개별적·구체적인 규정을 개선하는 것에 앞서서 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가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입법 목적과 취지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²⁷⁾ 개인정보 그 자

26) 이하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개선방안은 기존 필자의 선행 논문인 “빅데이터·사물인터넷 시대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발전적 전환을 위한 연구”, 중앙법학 제17집 제4호(2015.12.), 25-45쪽에서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으로 변화하게 될 환경에 적합한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개선방향으로 제시한 것으로부터 기본적인 생각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이전의 줄고를 바탕으로 앞에서 지적한 문제점들과의 논리적 연계성을 가지면서 조금 더 발전된 생각을 부가하여 보완하였음을 밝힌다.

체를 강력하게 보호해야 할 당위성이 존재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인간의 기본적 권리나 자유를 보호하는데 그 전단계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있고, 특히 정보화시대 나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개인정보의 중요성은 점점 더 강조될 것이기 때문에 적법하고 안전한 처리를 위한 것이라면 그러한 관점을 명확하게 목적에 설정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목적은 곧 그에 규정된 개별 규정들의 해석 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대상으로 하고, 그 정보는 해당 정보로부터 식별되는 사람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는 인격적 측면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실제 개인정보가 활용되는 측면에서는 인격적 측면의 활용도 있지만 경제적 측면에서 재화로서 다루어지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²⁸⁾ 데이터 기반 경제에서의 재화로서의 성격은 더욱 강해질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는 해당 개인으로부터 출발하지만, 실제 처리·유통되는 단계에서는 정보주체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자의 측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²⁹⁾ 결과적으로

27)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제1조)을 목적으로 규정하며,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한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는 기본적으로 개인정보의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위치정보법은 “위치정보의 유출·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정보의 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한다. 위치정보법이나 신용정보법은 일부 개인정보의 활용에 관한 표현이 목적에 반영되어 있지만, 다른 법률과 다르게 위치정보법이나 신용정보법 상의 개인정보의 활용은 엄격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가 처리되고 유통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28) 윤석진, “개인정보 보호와 빅데이터 활용의 충돌, 그 문제와 입법정책 과제 -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 『중앙법학』, 제17집 제1호(2015), 36쪽도 “오늘날 정보는 단독으로 또는 다른 요소들과 결합하여 중요한 재화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29) 이러한 측면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포함한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는 그와 관련되

개인정보보호의 목적을 “개인정보의 보호” 맥락에서만 파악하지 않고 “안전한 활용”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³⁰⁾ 특히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개인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활용의 조화는 불가피한 규율 방향이다.

2.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체계 정비 및 법령 사이의 균형과 조화

개인정보보호법의 일반법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하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특칙을 제정하는 방향으로 법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각종 센서나 사물인터넷, 각종 스마트 기기나 인공지능을 통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가피한데, 모든 처리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민간과 공공, 일반 개인정보와 특수한 개인정보(의료정보나 신용정보) 등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다각적으로 개인정보가 처리될 것이다. 이러한 데이터 기반 사회·경제 환경에서 특정 순간에 어느 법률을 적용해야 할 것인지가 모호하거나 비합리적으로 중복 규제가 이루어지면 수범자에게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이는 4차 산업혁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된 환경에 적용될 여러 개인정보보호법령 사이의 정비 및 균형·조화가 필요하다. 즉, 개인정보보호법도 절대 불변이고 불가침의 법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과 다른 기준이 필요한 영역도 존재할 수 있다. 또한 각 영역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개인정보보호법보다 개인정보의 활용을 더 허용해야 할 영역도 있을 수 있다. 그러한 특수성과 예외를 인정한다고 하

어 있거나 그 배후에 있는 개인의 기본적 권리, 특히 사생활의 자유나 인격권과 같은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될 정도에 이른 경우나 그 침해에 대한 위협이 높은 경우에 규제의 강도를 높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의 입법 기술이 필요하다. 이인호, 앞의 글, 65-66쪽도 ‘개인정보의 보호’와 ‘사생활비밀의 보호’는 규범적으로 구별되어야 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은 위협예방법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전면적인 통제권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의 가치의 적절한 균형을 도모하는 것이 모든 국가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추구하는 공통된 방향이라고 한다.

30) 이대희, “빅데이터와 개인정보 보호”, 『정보법학』, 제19권 제2호(2015), 148-150쪽도 데이터 수집에서 이용으로 데이터 보호규범의 방향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의 일반원칙의 관점에서 검토한 후 예외를 인정하는 순으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거의 동일한 규정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의 일원화가 바람직하다. 이를 통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중복이 제거되고 수범자의 입장에서는 보다 명확한 법준수가 가능해진다. 또한 불가피하게 중복해서 규정하거나 혹은 예외를 규정하는 경우에도 법령 사이의 제재를 조화시키고 제재가 중복되지 않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또한 중복하여 규정하는 경우에는 일반법과 특별법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서로 다른 법률로 넘기는 방식의 입법보다는 보다 명확하게 어느 법규정이 적용되는가를 밝히는 것이 타당하다.

3. 개인정보 정의 규정의 개선

다양한 의무와 제재가 규정되어 있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가 적용되는 대상이 명확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혼란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정의 개념을 수정하거나 혹은 적어도 판단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³¹⁾ 특히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처리하는 데이터의 불법성 여하에 따라 경쟁력에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개념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불필요한 법적 논쟁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의 입법적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는 엄격한 형사제재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적용대상인 개인정보의 범위가 너무 넓게 되면 부당하거나 과도한 형사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개인정보의 성질, 관련 규정 위반시 위법성 혹은 권리 침해의 정도 등을 묻지 않고 너무 과도한 제재를 규정한 것은 아닌지 반성이 필요하다. 만일 현재와 같이 형사제재, 행정제재, 과징금, 민사책임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한다면, 적용대상인 개인정

31)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대상의 명확성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의 수범주체인 ‘개인정보처리자’의 범위를 명확히 확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민호, “개인정보처리자에 관한 연구”, 『성균관법학』, 제26권 제4호(2014.12), 256쪽은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를 “업무를 목적으로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로 한정·구체화할 것을 제안”한다.

보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수범자에게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줄 필요가 있다. 반면, 형사제재 등 제재의 대상이나 범위를 축소하거나 제한적으로 규정하면서 사후규제 중심으로 전환한다면 현재와 같이 폭넓은 개인정보 개념을 유지하더라도 무방할 것이다. 혹은 복합적으로 규정하여 넓은 개인정보 개념을 유지하면서, 형사처벌 대상은 명확히 법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방식도 고려해볼만 하다. 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판단지표인 ‘식별가능성’과 ‘결합 용이성’을 구체적인 사안에서 판단할 때에는 문리적·기술적 의미만 밝힐 것이 아니라 규범적인 가치판단이 이루어져야 함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우리는 법을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법에 표현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다양한 해석방법론을 활용하여야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ICT 영역의 특수성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문리적인 판단과 기술적인 판단 방법에 의하여 법적인 결론을 좌우해버리는 실무 사례가 종종 발생하였고, 특히 신규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시행되는 과정에서 법률 위반을 하지 않기 위하여 보수적인 해석 태도를 취하면서 그러한 해석이 당연히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처럼 되어버린 점도 없지 않다. 그러나 합리적인 해석을 통한 법의 과도한 적용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보다 명확한 규범적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라도 개인정보의 개념 정의 속에 ‘합리적’과 같은 판단요소를 추가하는 것도 전반적인 해석 태도를 변화시키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³²⁾

32) 개인정보 개념의 합리적 해석의 또 다른 시도로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비추어 개인정보처리자의 개념 표지 중의 하나인 ‘개인정보파일’을 원용하여 개인정보의 개념 정의를 시도하는 견해도 있다. 즉, 김진환, “개인정보 보호의 규범적 의의와 한계 - 사법(私法) 영역에서의 두 가지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 『저스티스』, 통권 제144호(2014.10), 67-68쪽은 “개인정보법에 있어서 개인정보는, 기존 제2조 제1호상 정의에서 좀 더 나아가 “살아 있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팔호 부분 생략)로서 개인정보파일의 형태로 운용되는 정보”라고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4. 개인정보 활용 영역의 확대 - 중간 영역으로서의 익명화 정보 허용

그 자체에 개인 식별성이 존재하는 정보보다는 그 자체로는 개인 식별성이 없거나 매우 낮지만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식별성이 강화되는 정보가 실제에 있어서 더욱 유용하게 활용도도 높다. 이러한 정보에 대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보다 많은 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여 부가가치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중간 영역에 있는 정보에 대한 합법적인 처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론을 생각해볼 수 있다. 우선 해석론에 의하여 ‘식별 가능성’과 ‘결합 용이성’을 합리적·규범적으로 해석하고 이익형량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축소하는 해석을 함으로써 문리적·기술적으로만 해석한 결과로서의 개인정보의 범위보다 줄어들게 되면, 결과적으로 개인정보가 아닌 정보에 해당되어 그에 대한 처리가 가능해진다.³³⁾ 그러한 정보들 중에는 이론적·기술적으로는 재식별 가능성이 있지만, 합리적·규범적으로는 재식별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무의미한 경우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처럼 해석을 통한 개인정보 범위의 축소가 가능하지만, 문제는 해석하는 사람마다 범위가 상대적일 수 있다는 문제가 있고, 법적 가치관이나 해석기준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어서 결국 법적 안정성 혹은 예측 가능성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상존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본에서 도입된 것처럼 익명가공정보 제도를 신설하거나³⁴⁾ 아니면 중간영역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합리적 범위 내에서 비식별조치 혹은 가명화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처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적 책임을 감경해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

33) 개인정보 관련법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의 이익형량론의 적용에 대해서는 줄고,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의 해석에 있어서 이익형량론과 일반적 이익형량 규정의 필요성에 관한 고찰”, 「사법」 40호(2017), 77-125쪽 참조.

34) 일본 개인정보보호법(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제2조 제9호에서 익명가공정보를 정의하고, 동조 제10호에서 익명가공정보취급사업자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에서 익명가공정보취급사업자의 의무 등에 대하여 규정하여 익명가공정보 활용 과정에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시대의 경쟁력은 그러한 영역에 산재된 많은 정보를 처리함으로써 얻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5. 개인정보의 합법적·비침해적 이용 규정 확충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서면 신속하고 대규모로 개인정보의 유통이 발생하게 되는데, 모든 경우에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를 받거나 사전에 예측해서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제 상의 다양한 규정을 실제 적용하는 과정에서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여 유연하게 규제의 질과 양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 개인정보의 합법적·비침해적으로 안전하게 이용한 경우의 위법성 조각을 인정하는 일반 규정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이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일반 규정으로 별도로 규정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일반화·구체화한 기준을 추가·보완하여 설정함으로써 법원으로 하여금 이익형량의 기회를 주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³⁵⁾³⁶⁾

35) 김일환, “개인정보보호법 적용대상의 합리화 방안 - 법 제58조의 입법론을 중심으로 -”, 「공법연구」, 제43집 제1호(2014), 31-52쪽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를 검토하여,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목적을 위한 포괄적·전체적인 적용 배제하는 식의 입법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전제하고 개인정보처리자나 개인정보의 종류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법 적용의 정도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이러한 견해처럼 입법화를 추진한다면, 개별규정에서든 일반규정에서든 이익형량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의 마련이 불가피할 것이다.

36) 추가적으로 보완할 판단 기준으로는 (1) 개인정보의 합법적 이용의 가능성, (2) 개인정보의 이용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3) 이용된 개인정보의 양과 질, (4) 이용목적, 즉 영리목적인가 비영리목적인가 등, (5) 이용범위, (6) 개인정보 이용을 금지하는 경우 경제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혹은 공익의 중요성, (7) 이용행위의 유형, 즉 단순한 내부적 이용, 단순한 처리, 수집, 제공 등인가 아니면 일반에 공개하였는가의 여부, (8) 기본적 혹은 사전적 혹은 관련 권리(표현의 자유 등)의 존재 여부, (9) 이용된 개인정보와 개인정보처리자와의 관련성, (10)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혹은 과실, 신의 존재 여부, (11) 사회의 평균인 혹은 조리, 사회통념 등으로부터 개인정보의 공정이용이 필요한 경우인지의 여부, (12)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최경진, 앞의 “빅데이터·사물인터넷 시대

6. 개인정보 수집 동의 제도 개선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공통적인 규제방식인 사전적인 고지후 동의는 형해화된 동의로 전락한 경우가 많아서 사실상 형식규제에 그치고 있다. 문제는 그러한 형식 규제를 통과하기만 하면 합법적인 처리근거가 인정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개인정보침해의 문제는 동의를 받았는지 안받았는지와도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얼마나 안전하게 처리하는가에 달려있다. 때문에 형식적 동의에 천착하기 보다는 정보주체의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고 필수적인 정보(개인정보의 처리기준, 절차, 방법 등)에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고지나 동의를 활용함으로써 형식적인 동의 요건 때문에 개인정보의 활용 가능성이 저해되는 것은 막으면서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등과 같이 중요한 정보나 개인정보의 보호 필요성이 높은 행위(반대로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높은 행위)³⁷⁾를 제외하고는 사전 규제로서의 동의 규제나 각종 형식 규제는 과감히 축소하거나 처벌 없는 규제로 전환하여 보다 자유롭게 합법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사후적으로 개인정보의 오남용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체계로 전환하여,³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뒤쳐지지 않는 규제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 사전규제로서의 동의규제를 축소하더라도 사후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후거부(opt-out) 절차는 함께 규정이 되어야 한다.³⁹⁾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발전적 전환을 위한 연구”, 43-44쪽 참조.

- 37) 동의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철회권 등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동의를 보다 실질화 할 필요가 있다. 동의제도를 유의미한 제도로 만드는 방안과 관련하여 캐나다의 ‘온라인 동의 가이드라인(OPC, Guidelines for Online Consent, 2014)’이 제시하는 ‘계층화된 고지(layered notices)’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정찬모, “개인정보보호에 있어 정보주체의 동의”, 「법학연구」, 제18집 제1호(2015.3), 86쪽.
- 38) 권현영·윤상필·전승재, “4차 산업혁명시대 개인정보권의 법리적 재검토”, 「저스티스」, 통권 제158-1호(2017.2), 34-35쪽도 빅데이터 환경에 대한 Opt-in 규제 적용의 부적합성을 지적하고 있다.
- 39) 허성욱, “한국에서 빅데이터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제도적 과제”, 「경제규제와 법」,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제7권 제2호(2014.11.), 18쪽도 “빅데이터 산업의

7. 개인정보의 국가간 이동에 대한 규제 실효성 확보

4차 산업혁명을 가속화 하면서 일부 선진국은 클라우드 컴퓨팅 등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국가간 이동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글로벌 시장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발전하도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글로벌 4차 산업혁명 환경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국가간 이동을 자유롭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집행력이 미치지 못하거나 우리나라보다 보호수준이 낮은 국가로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성 또한 존재한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나라 국내에서의 규제와 해외에서의 규제 사각지대로 인해 국내외 규제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행정적·형사적 제재를 직접 해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적용하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지만 국외이전을 규율하고자 하는 목적이 우리나라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정보주체인 국민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해외 개인정보처리자가 국내법을 그대로 모두 준수할 것인지 아니면 국외이전 규제체계로 들어올 것인지를 선택하게 해야 한다. 국외이전 규제체계로서는 적절성 평가 결정에 의한 국외이전, 안전조치에 기한 국외이전 또는 구속력 있는 기업 규칙에 의한 국외이전 등 다양한 수단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어느 경우에도 개인정보처리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하고,⁴⁰⁾ 나아가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었을 경우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절차를 준수하

원활한 성장을 위해서는 정보의 특성을 고려하여 부분적으로는 사전동의 방식에서 사후거부의 방식(opt-out)의 개인정보보호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한다.

- 40) 투명성은 개인정보 처리의 전 과정에서 요구되는 매우 중요한 기본원칙이다. 김일환, “초연결사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제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법학』, 제29집 제3호(2017.9), 62쪽은 “개인정보 수집과 처리의 투명성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 결정권 보호를 위하여 제공되는 수단이다. 그러한 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보주체에게 통지와 투명성이라는 제도적 대책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여야 한다. 이처럼 국내의 형식 규제를 따르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실질적 보호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과도 일맥상통한다.

IV. 맺음말

4차 산업혁명이 발전하여 변화하게 될 우리의 미래는 데이터 기반 사회 혹은 경제라고 할 수 있고, 그 중심에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제를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에 따라서 개인정보의 보호라는 측면과 개인정보의 활용을 통한 경제의 발전에 서로 다른 영향을 줄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개인정보의 활용도 포기할 수 없는 법익임과 동시에 개인정보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개인의 법익 또한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법익이다. 따라서 양자를 조화시키기 위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의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중복과 부조화라는 문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범위 및 판단기준의 불명확, 합리적 개인정보 활용 수요에 대한 유연성 부족, 동의기반의 형식적 규제 중심의 법제, 개인정보의 국가간 이동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와 역차별이라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개인정보보호법제를 만들기 위한 개선방향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목적과 규제방향을 개선하여 개인정보보호와 안전한 활용의 양 측면을 모두 고려할 것을 제안하였고,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체계 정비 및 법령 사이의 균형과 조화도 중요한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지속적인 논란이 되는 개인정보 정의 규정에 대하여도 합리적 판단 기준의 설정과 그것을 명확화하기 위한 입법론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개인정보 활용 영역의 확대 방안으로서 중간 영역으로서의 익명화 정보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개인정보의 합법적이고 비침해적인 이용을 위한 입법론적 검토와 함께 개인정보 수집 동의 제도를 개선하여 대상별 차등화하는 방안과 함께 개인정보의 국가간 이동에 대한 규

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개선의 필요성도 제안하였다. 이 글에서 논의한 사항 외에도 여러 과제가 존재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위에서 지적한 방향성을 유지하면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이 조화가 되어 안전한 개인정보의 활용체계가 구축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제의 개선을 이뤄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헌영·윤상필·전승재, “4차 산업혁명시대 개인정보권의 법리적 재검토”, 「저스티스」, 통권 제158-1호, 2017.2
- 김민호, “개인정보처리자에 관한 연구”, 「성균관법학」, 제26권 제4호, 2014.12
- 김일환, “개인정보보호법 적용대상의 합리화 방안 - 법 제58조의 입법론을 중심으로 -”, 「공법연구」, 제43집 제1호, 2014
- 김일환, “초연결사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제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법학」, 제29집 제3호, 2017.9
- 김진환, “개인정보 보호의 규범적 의의와 한계 - 사법(私法) 영역에서의 두 가지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 「저스티스」, 통권 제144호, 2014.10
- 오병일, “개인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 활성화 정책의 문제점”, 「의료와사회」, 6호, 2017.7
- 윤석진, “개인정보 보호와 빅데이터 활용의 충돌, 그 문제와 입법정책 과제 -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 「중앙법학」, 제17집 제1호, 2015
- 이대회, “빅데이터와 개인정보 보호”, 「정보법학」, 제19권 제2호, 2015
- 이인호,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 개념에 대한 해석론 - 익명화한 처방전 정보를 중심으로 -”, 정보법학 제19권 제1호, 2015
- 정찬모, “개인정보보호에 있어 정보주체의 동의”, 「법학연구」, 제18집 제1호, 2015.3
- 최경진,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의 해석에 있어서 이익형량론과 일반적 이익형량 규정의 필요성에 관한 고찰”, 「사법」 40호, 2017
- 최경진, “빅데이터·사물인터넷 시대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발전적 전환을 위한 연구”, 중앙법학 제17집 제4호, 2015.12

허성욱, “한국에서 빅데이터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제도적 과제”, 「경제규제와 법」,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제7권 제2호, 2014.11

Klaus Schwab,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at it means, how to respond”. World Economic Forum - Global Agenda :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국문초록>

빅데이터(Big Data),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과 같은 새로운 ICT 기술과 서비스가 등장하고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새로운 혁신이 가져올 미래의 변화상을 4차 산업혁명(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이 발전하여 변화하게 될 우리의 미래는 데이터 기반 사회 혹은 경제라고 할 수 있고, 그 중심에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제를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에 따라서 개인정보의 보호라는 측면과 개인정보의 활용을 통한 경제의 발전에 서로 다른 영향을 줄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개인정보의 활용도 포기할 수 없는 법익임과 동시에 개인정보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개인의 법익 또한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법익이다. 따라서 양자를 조화시키기 위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의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중복과 부조화라는 문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범위 및 판단기준의 불명확, 합리적 개인정보 활용 수요에 대한 유연성 부족, 동의기반의 형식적 규제 중심의 법제, 개인정보의 국가간 이동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와 역차별이라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개인정보보호법제를 만들기 위한 개선방향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목적과 규제방향을 개선하여 개인정보보호와 안전한 활용의 양 측면을 모두 고려할 것을 제안하였고,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체계 정비 및 법령 사이의 균형과 조화도 중요한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지속적인 논란이 되는 개인정보 정의 규정에 대하여도 합리적 판단 기준의 설정과 그것을 명확화하기 위한 입법론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개인정보 활용 영역의 확대 방안으로서 중간 영역으로서의 익명화 정보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개인정보의 합법적이고 비침해적인 이용을 위한 입법론적 검토와 함께 개인정보 수집 동의 제도를 개선하여 대상별 차등화하는 방안과 함께 개인정보의 국가간 이동에 대한 규제 실효성을 확보

하기 위한 법제개선의 필요성도 제안하였다. 이 글에서 논의한 사항 외에도 여러 과제가 존재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위에서 지적한 방향성을 유지하면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이 조화가 되어 안전한 개인정보의 활용체계가 구축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제의 개선을 이뤄가야 할 것이다.

주제어 : 4차 산업혁명,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Improv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s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Choi, Kyoung-jin*

In the course of the emergence and development of new ICT technologies and services such as Big Data, Internet of Thing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the future will change by these new innovations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future of this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ill change and our future will be data-based society or economy. Since there is personal information at the center of it, the development of the economy through the utiliz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will depend on how to make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s. In Korea, which is trying to lead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t is a legal interest that can not give up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and also it is an important legal benefit that can not give up the personal interests of individuals who want to protect from personal inform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law 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a rational way to harmonize the two. In this regard, this article discusses the problems of duplication and incompatibility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and the uncertainty of the judgment standard, the lack of flexibility responding to the demand for the use of reasonable personal information, And there is a problem of reverse discrimination against domestic area compared to the regulated blind spot in foreign countries.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and to improve the legisl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e proposed to consider both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safe use by improving the purpose and regulation direc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The balance and harmony between the systematical maintenanc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gislation and laws and regulations were also set as important directions. It is pointed out that the

* Professor of Law, Gachon University

establishment of rational judgment criteria and the legislative review to clarify it are necessary for the constantly controversial personal information definition regulation and the method of allowing anonymization information as the intermediate domain. In addition to the legislative review for the legitimate and non-invasiv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there is a need to improve the collective consent system for collecting personal information to differentiate the subject and to improve the legislation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regulation on the mov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between countries. In addition to the issues discussed in this article, there may be a number of challenges, but overall, the prot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should be harmonized while maintaining the direction indicated above.

Key Words :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Personal Data, Personal Informati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nformation Network Act, Big Data, Internet of Things(IoT), Artificial Intelligence(A.I.)